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8155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구합6435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30.
판 결 선 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8,046,800원, 농어촌특별세 2,902,340원, 지방교육세 5,804,680원 합계 66,753,82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행의 "있었다"를 "있었고, 다른 기계장치를 통한 생산품은 없었다"로 고치고, 제11쪽 제3행의 "갑 제8호증" 앞에 "갑 제2호증, "을, 제13쪽 제1행의 "상의" 다음에 "사업의 분리에 해당하거나 다른"을 각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는 비정질포일제품의 개발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판매를 위한 제품을 생산한 적이 없으며 당연히 이에 따른 매출도 없었으므로, D가 비정질포일제품의 개발 및 생산 등 브레이징 사업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D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2항에서 그 의미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6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들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2)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5항은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한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 '산업분류 총설'의 「3. 표준산업분류 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요, 가. 산업의 정의」는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라 정의되며,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라 정의된다. 산업 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의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사. 산업분류의 적용원칙 5)」는 "제조업의 경우 그 제품의 고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문언과 그 취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의 '사업'의 양수에는, 양도인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 기술 개발 등에 상당한 정도의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이미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양수인이 그와 관련된 기술이나 물적 자산, 인적 자산 등을 인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제조업의 경우 양도인이 영위한 것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인이 그 제품의 고안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4)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U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의 비정질포일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 이미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D로부터 그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의 P에 대한 매출은 비정질포일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브레이징 기술 개발을 위한 P의 연구에 대하여 그 연구에 필요한 자재들을 공급함에 따른 매출이었고, D는 위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총 1,227,048,322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 비정질포일제품의 시제품 생산 단계까지 나아갔다(원고는 을 제6호증의 출장복명서가 불량품을 쌓아둔 것을 제품으로 오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U의 증언에 비추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결국 D는 비정질포일제품의 고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상당한 정도로 자원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D 사이에, D가 소유 및 운영하는 브레이징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포함한 영업을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사업 양수도 계약서의 형식이나 기재가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양도대상이나 양도방법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로부터 비정질포일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진공벨트스피닝 장비 등 기계장치와 특허권 등을 인수하였고, 브레이징 사업과 관련된 주요 매출처였던 P과의 거래도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D에서 비정질포일제품의 개발을 주로 담당한 이사 F도 원고로 이직하였다. 또한 위 사업 양수도 계약서에는 D가 브레이징 사업 관련 자산, 정보 및 자료를 모두 원고에게 양도 또는 인계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를 막론하고 브레이징 사업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영위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을 제4호증 사업 양수도 계약서 제4조 제3항), 이에 따라 D [redacted]지점은 원고가 기계장치를 인수하여 간 뒤로는 비정질포일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

④ 설령 D의 비정질포일제품 판매를 통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D가 이미 비정질포일제품의 고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로 자원을 투입하였으며, 이후에 그와 관련한 기술과 설비 등을 양도하여 더 이상 비정질포일제품의 생산을 하지 못한 이상, 단순히 판매를 통한 매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D가 비정질포일제품의 개발 및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⑤ 공장등록증명서상 분류코드는 공장설립 신고를 하는 사람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이용해 임의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한 점,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총설'의 3. 표준사업분류 개요, 사. 산업분류의 적용원칙 3)은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산업분류코드가 원고의 변경 전 산업분류코드인 '24229'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D가 위 '24229'와 관련한 제조업, 즉 비정질포일제품의 개발 및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7

재판장 판사 조해현

판사 왕정옥

판사 송혜정